



재 정 경 제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원자재 수급 불균형 대응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

최근 중동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공공계약 이행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계약 참여업체의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알려드리니 적극 이행토록 협조하여 주시고,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공공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 조치사항

-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관련 근거 : 「국가계약법」 제19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1항 내지 제4항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내지 제5항

2.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조치사항

- 공사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0분의 5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부터 90일 이내인 경우에도 품목·지수 조정률이 3% 이상 상승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관련 근거 : 「국가계약법」 제19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제5항, 제6항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제2항, 제3항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1조제2항, 제3항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제2항, 제3항

3. 입찰 보증금에 관한 사항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개별 법령에 의해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관련 법령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 입찰 보증금을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한다.

* 관련 근거 : 「국가계약법」 제9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4항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22조제2항, 제3항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1조제2항, 제3항
「(계약예규)용역계약입찰유의서」 제15조제2항, 제3항

끝.

재정경제부장관

수신자 국가정보원장, 국방부장관,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감사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보건복지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 국립중앙과학관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농촌진흥청장, 법제처장, 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병무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산림청장, 기상청장, 새만금개발청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소방청장,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관세청장, 국토교통부장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조달청장, 우정사업본부장, 질병관리청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재외동포청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 방위사업청장, 외교부장관, 우주항공청장,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가유산청장, 지식재산처장, 성평등가족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데이터처장,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국민통합위원장,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

사무관 **정병아** 계약정책과장 **김장훈** 전결 2026. 4. 10.

협조자

시행 계약정책과-516 접수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어진동) / www.moef.go.kr

전화번호 044-215-0000 팩스번호 044-215-0000 / byoungah24@korea.kr / 대한민국 공개